

# 審 查 報 告 書

2002. 1. 18

총무위원회

## 1. 審査經過

가. 提出日字 : 2002. 1. 14

나. 提出者 : 瑞山市長

다. 回附日字 : 2002. 1. 14

라. 上程日字 : 2002. 1. 18

## 2. 提案說明要旨(提案說明 : 自治行政課長 崔鐵珪)

### 가. 提案理由

-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의 명칭을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대표할 수 있는 명칭으로 개정하여 시민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.

### 나. 主要骨子

-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의 기구명칭을 “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”로 변경함.

### 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

- 금번에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제65회 임시회에서 의결확정된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의 명칭을 현실에 부합되게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소가 관할하는 범위가 종합운동장 이외에도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까지 포함하고 있어 이를 대표할 만한 명칭으로 변경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
- 관련 근거법인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제105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저촉되지 않으며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중앙의 권고도 있는등 본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 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나 앞으로는 조례개정 등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### 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: 생략

### 5. 討論 및 少數意見 : 없었음

### 6. 審査結果 : 원안가결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      | 제 245 호        |
| 의 결<br>년 월 일 | 2002.<br>(제 회) |

##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|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제 출 자 | 서 산 시 장      |
| 제출년월일 | 2002. 1. 14. |

#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245 |
|----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 : 2002. 1. 14.  
제출자 : 서산시장

## 개정이유

-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의 명칭을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대표할 수 있는 명칭으로 개정하여 시민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

## 주요골자

-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의 기구명칭을 “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”로 변경함(안 제15조제5호 및 별표3)

## 기타 참고사항

- 입법예고 : 해당없음.
- 관련법규
  - 지방자치법 제102조, 제105조
  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
  - 충청남도 행정 12200-83(2002. 01. 10)호

##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중 제5호와 제5호라목중 “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”를 각각 “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”로 한다.

[별표3] 사업소의 명칭·위치중 “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”의 명칭을 “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행  | 개정안      |    |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|    |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---|----------|----|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|----|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<p>제15조(소관사무) 사업소별 관장 또는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~4. (생략)</p> <p>5. <u>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</u></p> <p>가.~다. (생략)</p> <p>라. 기타 <u>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</u>에 관련한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</p> <p>[별표 3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사업소의 명칭·위치</u><br/>(제13조제2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명칭</th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위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문화회관</td> <td>(생략)</td> </tr> <tr> <td>상하수도사업소</td> <td>(생략)</td> </tr> <tr> <td>시립도서관</td> <td>(생략)</td> </tr> <tr> <td>종합사회복지관</td> <td>(생략)</td> </tr> <tr> <td><u>종합운동장<br/>관리사업소</u></td> <td>(생략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명칭       | 위치 | 문화회관 | (생략) | 상하수도사업소 | (생략) | 시립도서관 | (생략) | 종합사회복지관 | (생략) | <u>종합운동장<br/>관리사업소</u> | (생략) | <p>제15조(소관사무)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</u></p> <p>가.~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라. ---- <u>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[별표 3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사업소의 명칭·위치</u><br/>(제13조제2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명칭</th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위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문화회관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>상하수도사업소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>시립도서관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>종합사회복지관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><u>문화체육시설<br/>관리사업소</u></td> <td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명칭 | 위치 | 문화회관 | (현행과 같음) | 상하수도사업소 | (현행과 같음) | 시립도서관 | (현행과 같음) | 종합사회복지관 | (현행과 같음) | <u>문화체육시설<br/>관리사업소</u> | (현행과 같음) |
| 명칭  | 위치       |    |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|    |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문화회관  | (생략)     |    |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|    |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상하수도사업소   | (생략)     |    |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|    |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시립도서관   | (생략)     |    |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|    |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종합사회복지관   | (생략)     |    |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|    |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<u>종합운동장<br/>관리사업소</u>  | (생략)     |    |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|    |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명칭  | 위치       |    |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|    |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문화회관  | (현행과 같음) |    |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|    |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상하수도사업소   | (현행과 같음) |    |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|    |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시립도서관   | (현행과 같음) |    |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|    |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종합사회복지관   | (현행과 같음) |    |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|    |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<u>문화체육시설<br/>관리사업소</u>   | (현행과 같음) |    |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|    |    |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
#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 관계법령발췌

## 【지방자치법】

제102조(행정기구)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, 시·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, 시·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·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행정기구의 설치·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105조(사업소)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의 정원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## 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】

제10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 및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·국 및 실·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실·과·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.

②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하여 실·국 또는 실·과·담당관을 운영하고 있는 시·군·구는 그 설치기준의 범위안에서 실·국 또는 실·과·담당관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.

③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고 있는 시의 시장은 별표 4의 규정에 의한

당해 시 본청의 실·과·담당관의 정수의 일부를 관할자치구가 아닌 구의 정수로 조정하여 이를 운영할 수 있다.

④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 및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⑤시·도지사는 관할 시·군·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.

⑥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 및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